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03. 0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현행 하수도 사용요금은 처리원가의 48.8퍼센트 수준으로 매년 적자액이 증가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와 채무상환에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48.52퍼센트 인상 조정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127조
- (3) 하수도법 제21조
- (4)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라.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마. 입법예고결과 : 2003. 8. 1 ~ 8. 20(20일간)/의견 1건, 미 반영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요율은 2003년 11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

(제13조제2항 관련)

업종	구 분	사용량 (m³/월)	m³당 단가 (원 가)	비 고
		1 - 10	150	
		11 - 20	190	
 7] -	성 용	21 - 30	300	
/		31 - 40	370	
		41 - 50	400	
		51 이상	450	
업 무 용		1 - 20	190	
		21 - 50	370	
		51 - 100	450	
		101 - 300	490	
		301 이상	520	
영 업 용		1 - 30	310	
		31 - 50	430	
		51 - 100	630	
		101 이상	850	
	1종	1 - 200	190	
		201 - 700	210	
목		701 - 1000	240	
		1001이상	250	
		1 - 200	540	
욕	2종	201 - 500	690	
		501 - 1000	900	
		1001이상	970	
산 '	업 용		220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아 행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제13조제2항 관련)

(110 4 1/2 0 12 12)					
구 분		사 용 량	m³당 단가		
업 종		(m³/월)	(원)		
		1-10	100		
	a o	11-20	130		
71. 74		21-30	200		
		31-40	250		
		41-50	270		
		51이상	300		
		1-20	130		
업무용		21-50	250		
		51-100	300		
		101-300	330		
		301이상	350		
		1-30	210		
영 업 용 ·		31-50	290		
o H	0	51-100	420		
		101이상	570		
	1종	1-200	130		
목		201-700	140		
7	15	701-1000	160		
		1001이상	170		
		1-200	360		
욕	2종	201-500	460		
7		501-1000	600		
		1001이상	650		
산 업 용			150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제13조제2항 관련)

(*11024-112-0-12-1)					
구분		사 용 량	m³당 단가		
업 종		(m³/월)	(원)		
	୍ଦ୍ରାଚ	1-10	<u>150</u>		
		11-20	<u>190</u>		
71. 2		21-30	<u>300</u>		
/		31-40	<u>370</u>		
		41-50	<u>400</u>		
		51이상	<u>450</u>		
		1-20	<u>190</u>		
업 무 용		21-50	<u>370</u>		
		51-100	<u>450</u>		
		101-300	<u>490</u>		
		301이상	<u>520</u>		
영업용		1-30	<u>310</u>		
		31-50	<u>430</u>		
0 =	0	51-100	<u>630</u>		
		101이상	<u>850</u>		
	1종	1-200	<u>190</u>		
목		201-700	<u>210</u>		
7		701-1000	<u>240</u>		
		1001이상	<u>250</u>		
		1-200	<u>540</u>		
욕	2종	201-500	<u>690</u>		
'		501-1000	900		
-		1001이상	970		
산 업 용			<u>220</u>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 12. 8)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2. 3. 25)
-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1992. 12. 8)
 -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 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2. 12. 8)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992. 12. 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 1. 4, 1992. 12. 8)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 3. 25)
-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1조(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31)
-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 8.31)
-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 8, 31)

□.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2. 12. 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 12. 31)
-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 제1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 시장은 하수관리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1의 2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3. 31. 조례 제2835호)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조례 제2835호)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2, 8, 14, 조례 제3119호)